

『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강승수, 김낙관, 김영길, 안주찬, 양진오
이선우, 이지연, 장세구, 최경동 (10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10일

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시의회 의원 장 미 경

나. 제안이유

- 사진 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, 사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(안 제3조 ~ 4조)
- 사업 및 지원(안 제5조 ~ 6조)
- 위탁(안 제7조)
- 포상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3조, 제39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8.27.~9.3.)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의 ‘문화예술’의 범주에 ‘사진’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진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책 발굴, 계획수립,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전반에 걸쳐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